#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승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452 발의연월일: 2022. 9. 21.

발 의 자:조승래・윤영찬・한준호

박찬대 • 변재일 • 서영석

서동용 · 최종유 · 정일영

강득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최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는 기관 간 공동연구 또는 외부공간(야외 등)에서의 연구 등 기존 대비 복잡·다양한형태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, 현행법에서는 연구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한정된 사고만을 연구실사고로 관리·보상함으로써 연구자보호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실정임.

이에 연구실사고의 정의 및 사고보고체계를 개선하고, 사고피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, 국·공립 연구기관 등 그동안 모호하였던 법의 적용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여 입법취지인 연구활동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또한, 2020년 법률 전부개정으로 신설된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험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

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, 2023년 시행 예정인 연구실 설치·운영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법률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비함(제2조).
  - 1) 연구실사고에 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되도록 함.
  - 2) 국가기관 또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하여 운영 중인 연구기관 들을 국·공립 연구기관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법률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해당 기관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연구주체의 장의 정의를 개선함.
- 나. 기관 간 공동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마련함(제23조).
- 다. 연구실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함(제26조).
- 라. 법률 개정(2020년)으로 신설된 안전점검·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 교육과 연구실 설치·운영기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미실시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(시정명령 등)를 신설함(제17조 및 제 33조).
- 마.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

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(제41조).

법률 제 호

##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나목 중 "국·공립연구기관"을 "국·공립연구기관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동 기능이 있고,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대학·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 연구실의 소유자를"을 "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"로 하며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12호 중 "연구실에서"를 "연구실 또는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서"로 한다.

가. 대학·연구기관등의 대표자(국·공립연구기관, 국·공립 대학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.)

나. 대학 · 연구기관등의 연구실의 소유자

제10조제3항 중 "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 술"을 "안전관리기술"로, "사람이어야"를 "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어야"로 한다.

제14조제3항 중 "실시요건 및"을 "실시요건, 면제대상 및"으로 한다. 제17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 중 "절

차 및 방법"을 "세부 부과기준"으로 한다.

9.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술인력이 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
제22조제3항 중 "안전"을 "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"으로 한다.

제23조 중 "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"을 "연구실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주체의 장은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·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 의 장
- 2. 대학·연구기관등이 다른 대학·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

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제3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지정 및 운영에"를 "지정·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"로 한다.
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- 2.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
-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1.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 설치·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한 경우
- 제4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1.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
  - 2.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의 실시 및 관리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"대학 · 연구기관등"이란 다 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. 가. (생 략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국・공립연구기관(국가 나. 국 • 공립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 한 기관 중 직제에 연구활 동 기능이 있고, 연구활동 을 위한 연구실을 운영하는 기관) 다. ~ 바. (생 략) 다. ~ 바. (현행과 같음) 2. • 3. (생략) 2. · 3. (현행과 같음) 4. "연구주체의 장"이란 대학 · 4. ----- 다음 각 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당 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. <신 설> 가. 대학 · 연구기관등의 대표 자(국·공립연구기관, 국· 공립 대학 등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 의 장을 포함한다.) 나. 대학 · 연구기관등의 연구 실의 소유자 5. ~ 11. (생 략) 5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"연구실사고"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 동종사자가 부상·질병·신체 장해·사망 등 생명 및 신체 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·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 을 말한다.

13. • 14. (생략)

- 제10조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) ①·② (생 략)
  - ③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제 3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<u>안전관리 기술에 관하여 「국가기술자격 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이 어야 한다.</u>

④ ~ ⑥ (생 략)

- 제14조(안전점검의 실시) ①·② (생 략)
  - ③ 안전점검의 실시시기, <u>실시</u> <u>요건 및</u> 안전점검 실시자의 자 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2 연구실 또는
연구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에
서
<u>.</u>
13.・14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
지정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
안전관리
<u>기술</u>
사람 <u>으</u>
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
<u>을 갖춘 사람이어야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안전점검의 실시) ①・②
(현행과 같음)
③ 실시요 과 머케리사 미
<u>건, 면제대상 및</u>
<b>.</b>

- 제17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제 대행기관의 등록 등) ① ~ ③ (생 략)
  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행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, 6개월 이내 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.

1. ~ 8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- ⑤ ~ ⑦ (생 략)
-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기준과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·요건,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과 대행기관의 운영·관리 에 필요한 사항, 제4항에 따른 등록취소, 업무정지,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, 제7항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2조(비용의 부담 등) ①・② 저

세17조(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
대행기관의 등록 등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4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
록된 기술인력이 제7항에 따른
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8
<u>세부 부과기준</u>
ll 22조(비용의 부담 등) ①·②

(생 략)

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.

④·⑤ (생 략)

제23조(연구실사고 보고) 연구주 체의 장은 연구실사고가 발생 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 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(생 략)

<신 설>

(연행과 같음)
③
제2항에 따른
연구실 안전
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연구실사고 보고) <u>연구실</u>
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
<u> 구주체의 장은</u>

- 1. 사고피해 연구활동종사자가 소속된 대학・연구기관등의 연구주체의 장
- 2. 대학 연구기관등이 다른 대 학・연구기관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 서 공동 연구활동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
- 제26조(보험가입 등) ① ~ ③ 제26조(보험가입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  - ④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 급청구권은 양도 또는 압류하

제30조(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의 지정·운영) ① (생 략)

<신 설>

②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3조(시정명령) ① 과학기술정 저 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일정한 기 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<신 설>

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제30조(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 의 지정・운영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.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-----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--

세33조(시정명령) ①

1. 제5조제3항에 따른 연구실

설치 · 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

1. ~ 7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1조(권한 · 업무의 위임 및 위 제41조(권한 · 업무의 위임 및 위 탁) ①・② (생략) <신 설>

실을 설치 · 운영하지 아니한 <u>경우</u>

- 2. ~ 8. (현행 제1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)
- ② (현행과 같음)
- 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  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.
  - 1.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 리사시험의 실시 및 관리
  - 2.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・ 훈련의 실시 및 관리